: 2024.11.12.09:00 : : : 2025.05.15 11:46

수 원 회 생 법 원

결 정

사 건 2024하단13732 파산선고

2024하면13732 면책

신 청 인 최병선 (731024-1067114)

(채 무 자)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2, 203동 302호(백현동, 백현마을2단지

아파트)

선 고 일 시 2024. 11. 12. 10:30

주 문

- 1.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.
- 2. 차국환[1967. 9. 18.생,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, 5층 세정회계법인(양재동, 금정빌딩)]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.
- 3.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.
- 4.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24. 12. 31.까지로 정한다.
- 5. 제1회 채권자집회,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·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, 면책신청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 및 장소를 2025. 1. 21. 14: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9호 법정으로 한다.
- 6.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.
- 7.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2025. 1. 14.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, 제5항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8.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.

이 유

: : 2024.11.12.09:00 : : : 2025.05.15 11:46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, 제355조, 제312조, 제365조, 제367조, 제545조, 제563조, 제549조, 제560조, 제562조, 제1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판사 원운재

